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20~2022]

2019. 4. 1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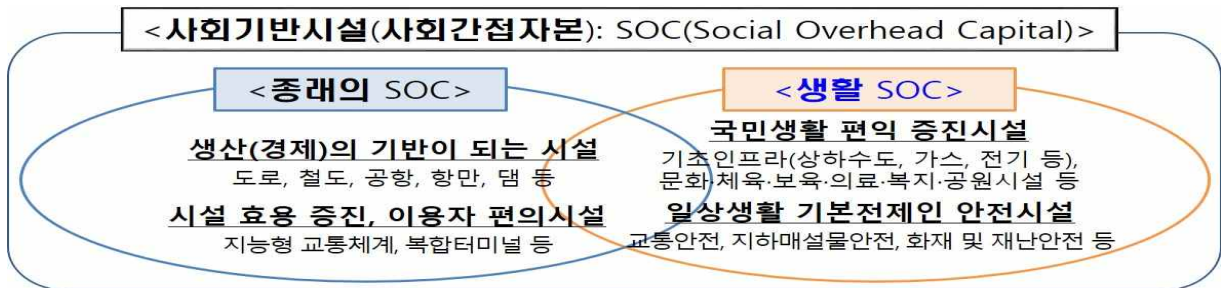
| | |
|-------------------------|----|
| I . 3개년계획 수립배경 | 1 |
| II . 생활SOC 비전과 분야 | 6 |
| III . 분야별 주요과제 | 15 |
| 1.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 15 |
| 2.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21 |
| 3.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26 |
| IV . 추진방식 혁신 | 30 |
| V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52 |

[붙임] 생활SOC 추진방식 혁신을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

I. 3개년계획 수립배경

1 생활SOC 개념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
- '국무총리 훈령*(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
 -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넓게 해석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개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 따른 분류

2 생활SOC 정책 추진배경

-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
 - *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연장 3위, 철도연장 6위
- 하지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
-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간*·지역내** 격차를 유발
 -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의 64.7%가 비수도권('17년, 복지부)
 - ** 실내체육시설 1개소당 인구 : 신도시·중심지 1.3~2.6만명 VS 구도심 4.5~10만명

- 최근에는 화재, 지하매설물 사고 등으로 생활 속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일상생활의 기본전제로서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 증가
 - * 제천화재('17.12), 아현동 KT지사 화재('18.11), 고양 열수송관 파열('18.12)
 - ** 통계청 사회조사('17)에서 환경문제 중 황사, 미세먼지 유입 불안이 1위(79.4%)

< 주요 생활인프라 현황 >

| 생활인프라 | 우리나라 | 선진국(美, 英, 日 등) |
|-------|-------------|----------------|
| 공공도서관 | 5만명당 1개소 | 1~4만명당 1개소 |
| 실내체육관 | 5.3만명당 1개소 | 1~2만명당 1개소 |
| 수영장 | 12.6만명당 1개소 | 1~4만명당 1개소 |

* '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은 22위지만 삶의 질은 29위

- 현행 생활SOC 공급방식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칸막이식 공급체계는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
 - 대부분의 생활SOC사업이 매칭 공모방식이고 국고보조율도 낮아 (30~50%, 부지비 별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참여가 곤란
 - 최근 지자체들은 부지문제 해소,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 위해 1개의 건물에 여러 생활SOC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를 선호
 - 현 공급체계는 1개 과가 1개 시설(체육센터, 어린이집 등)을 공급하는 칸막이 방식이어서 다수시설 복합화 지원 곤란

- ☞ 이제 양적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
 - 국민 전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포용국가 목표에 부합
 - 공급과정에서 지역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 생활SOC 중심의 자립적 지역공동체 형성 등 지역 활력의 마중물 효과도 기대
- ☞ 3개년계획 수립, 범정부적 추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하고 복합화 등 새로운 수요변화에 부응

3

추진 경과

-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지시('18.8.6, 수보회의)
 -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 사람중심 투자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
- '19 정부예산에 **생활SOC 투자 확대편성**('18년 5.8 → '19년 8.6조원)
 - * 관계부처 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8.27) 발표
-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지시(9.4, 구산동 현장방문)
 - * “생활 SOC 확대는 포용국기로 나아가는 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필요”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총리훈령 11.16)
 - 국무조정실 내 ‘생활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 설치·운영 中
- **광역·기초지자체장 영상회의**(총리주재, '18.12.26)
 - 생활SOC 정책 추진에 지자체의 참여 당부
- **생활SOC협의회 개최**(’18.12.17, ’19.1.30, 3.28), 생활SOC 추진계획 논의
 - * ‘19년 사업 추진방향, 「3개년(’20~’22) 계획」 수립 등
- **생활SOC 추진단-지자체 추진단 영상회의**(’19.1.18, 1.28, 2.11, 2.18)
 - 생활SOC 정책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정책추진방향 전파
-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19.1.28~)
 - * 전체회의 2회(1.28, 3.15), 분야별 자문회의 10회 등 수시 자문
- **대국민 공청회 실시** (’19.4.1)
 - * 일반국민, 언론,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530여명 참석

< 참고 : 생활SOC 추진체계 >

- ◇ (정책협의회)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기능 : 생활SOC 관련 정책, 재원확보대책, 제도개선 등 협의·조정
(* 생활SOC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자문단 운영)
- ◇ (생활SOC추진단)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 위해 설치
 - * 국무조정실장(단장), 국장급 부단장, 각 부처지자체공무원 전문가 파견 등으로 총 21명 구성

4

3개년계획 수립

□ (대상기간) '20~'22년 (착수기준)

□ (기본원칙) 지역주도 원칙, 신속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지원

* 지역의 창의를 적극 장려·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수요가 높은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대폭 확충

| | 기존방식 | 향후방향 |
|------|-----------------|-----------------|
| 계획주체 | 중앙이 계획 / 지방이 응모 | 지역이 계획 / 중앙이 지원 |
| 고려요소 | 효율성·이용수요 | 삶의 질·지역균형 |
| 공급지역 | 중심지역 | 서비스 소외지역 |
| 추진방식 | 부처별·시설별 단절적 추진 | 범정부적 통합적 추진 |

○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을 확충, 노후화된 기존시설은 리모델링 추진

□ (구성요소) 생활SOC 개념, 필요성, 現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고려하여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3대 분야-8대 과제, 추진방식 혁신을 제시

□ (대상분야)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분야와 삶의 전제인 안전분야를 대상

○ '18년 설정된 사업범주에서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밀접한 사업은 추가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 및 생활SOC 개념 재정립

* (기존, '19년) 8.6조원, 192개 사업 → (재구조화, '19년) 8.0조원 144개 사업

○ 문화·체육·복지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 확충에 중점

- 특히, 핵심시설*은 국가최소수준(수요인구와 접근성 기준 등) 대비 서비스소외지역에 시설공급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

*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 삶의 질 이전에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요구를 감안,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도 대상으로 포함

□ (제도개선) 생활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애요인 해소, 지원 확대 등 동시 추진

* 복합화 촉진방안, 국고 보조율 조정방안,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등

- (일본)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통폐합 및 리모델링에 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14년~)
 - *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의 집약화·복합화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 공공시설의 현황파악 및 이용평가*를 통해 개·보수 통·폐합, 이전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적정입지 선정
 - * 공공시설의 노후도, 기능, 입지 등 3가지 평가를 통해 시설 재배치 방침을 정함
 - ☞ (시사점)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 SOC의 집약 및 복합화 지원
- (독일) '등가치적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국토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
 - * 「국토계획법(ROG)」을 제정하면서 국토계획의 목표를 독일 전체의 생활조건이 '최소한 동일가치'가 되어야 함을 명시('65년)
 -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농촌지역에서 등가치적 생활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필수공공시설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 주민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적정한 교통수단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시사점) 생활여건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거점별로 생활 SOC를 공급하고, 시설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개발과 교통비 지원
- (미국) 각종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하고, 근린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이나 공급계획 수립 시 주민승인과정을 통해 결정함
 - * 미국 공공시설 : ① 광역도시시설(Regional/Citywide Facility)
② 근린공공시설(Local/Neighborhood Facility)로 구분
 - 근린공공시설을 축소 및 폐지할 경우 주민대표와 협의하고, 해당 공공서비스를 유사시설에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 검토
 - ☞ (시사점) 생활 SOC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시설별 적정규모로 공간을 배정

II. 생활SOC 비전과 분야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3
대
분
야
·
8
대
핵
심
과
제

0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 1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 2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 3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0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4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체계)
-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 6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0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7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아영장)

추진방식혁신(제도개선)



(순과정) 지역주도 - 중앙지원, 주민참여

총 투자규모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 수준 투자

1 생활SOC 비전과 목표

(1) 비전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 **(국민 누구나 : 포용국가)** 영유아·청소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생활인프라를 함께 누리는 나라
- **(어디에서나 : 균형발전)** 보육·복지·문화·체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를 전국적으로 국가최소수준 이상 공급
 -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핵심 생활SOC 시설에 대해 국가 최소(공급)수준을 설정하여 지역간·지역내 격차 해소
- **(품격 있는 삶 : 사람중심)**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 투자로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 강화
 -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양적·질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

(2) 목표 :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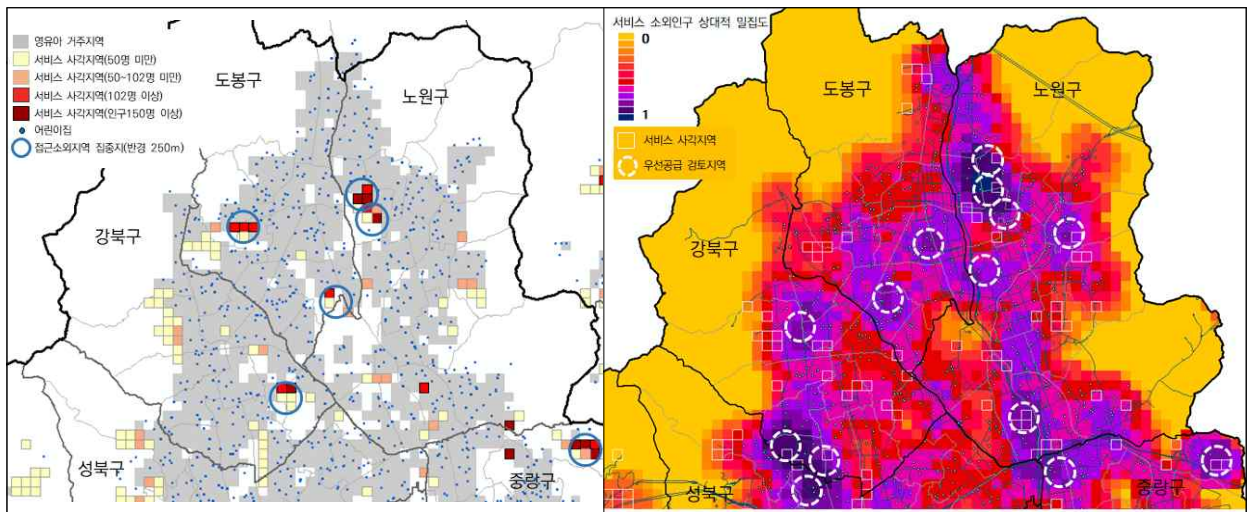
- **(핵심 생활SOC)** 공공도서관,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 **(국가최소수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국토부, '18.12)으로 도출한 서비스 소외지역(서비스 사각·부족지역)을 우선 공급대상지역으로 검토
 - 시설 소관부처의 자체기준과 지자체 의견, 현장여건 등을 함께 고려
 - * 전 국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기본법 개정 추진 중('19.2, 의원입법 발의)
- **(정책목표)** 국정과제 및 기 발표된 국가계획*, 선진국 수준 등 감안하여 설정
 - * 어린이집(공보육 40%), 유치원(국공립 40%), 다함께돌봄(1,817개) 등

(3) 총 투자규모 : 3년간 `20~`22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3조원) 투자

« 우선 공급검토지역 사례 ① - 어린이집 »

□ 서비스 소외지역을 고려한 우선공급 검토지역 검토

- 국토부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도보 5분, 250m)과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기준(500인당 1개소)을 동시 고려
 - 소외지역(사각, 부족)중 서비스 소외인구 밀집지역에 우선공급을 검토
 - ⇒ (서비스 사각지역) 국가최소기준 미달, 접근성이 하위 20%이하
 - (서비스 부족지역) 거주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한 지역
- ※ 서비스 소외지수 : 서비스 소외(접근, 용량)인구의 상대적 밀집도(도시, 비도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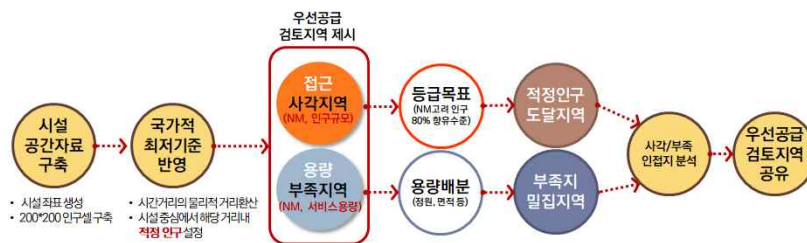
<서비스 사각지역>

<우선공급 검토지역>

강북구 3개소, 도봉구 2개소, 노원구 6개소 검토필요

□ 공급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협의·평가 환류 체계 구축

- 복지부 및 지자체의 검토·협의 과정을 통해 공급목표(예 : 신축 300개소) 및 공급기준(예 : 2km내 소외영유아 도시 1500인, 비도시 500인 이상) 조정



- (시설 공급효과 평가) 시설의 공급 효과 시뮬레이션(사각 및 부족지역 감소 효과) 평가를 통한 입지 타당성 검토
- (계획 과정 및 결과의 공유) 시설 현황 및 계획효과 분석 등 분석 맵을 향후 생활SOC 플랫폼에 탑재하여 쌍방향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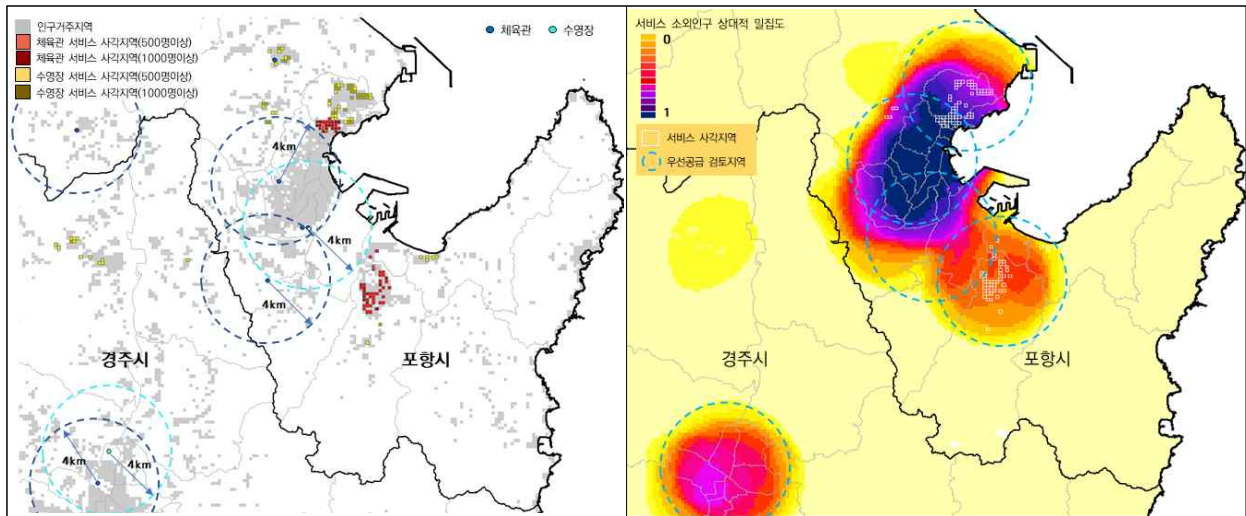
« 우선 공급검토지역 사례 ② - 국민체육센터 »

□ 서비스 소외지역을 고려한 우선공급 대상지역 검토

- 국토부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차량 15분)과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공급기준(차량 10분, 배후인구 4만명당 1개소)을 동시 고려
- 소외지역(사각, 부족)중 서비스 소외인구 밀집지역에 우선공급 검토

⇒ (서비스 사각지역) 국가최소기준 미달, 접근성이 하위 20%이하
 (서비스 부족지역) 거주 인구 수 대비 시설 용량이 부족한 지역

※ 서비스 소외지수 : 서비스 소외(접근, 용량)인구의 상대적 밀집도(도시, 비도시 구분)
 체육관, 수영장 소외인구를 각각 도출 후 중첩지에 국민체육센터(체육관+수영장) 공급



<서비스 사각지역>

<우선공급 검토지역>

포항시 4개소, 경주시 1개소 검토필요

□ 공급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협의·평가 환류 체계 구축

- 문체부 및 지자체의 검토·협의 과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공급목표 및 합리적 공급기준을 도출
 - ⇒ 공급목표 : 체육관 1개소/3.4만명, 수영장 1개소/8.5만명 달성을 위해 체육관 400여개, 수영장 200여개 추가 소요
 - ⇒ 공급기준 : 차량 10분(4km) 기준 시설 소외인구 4만명이상 시 추가 1개소
- (공급계획 타당성 평가 지원) 신규 시설의 적정입지 및 증개축 대상 탐색 시 공급효과 분석 등을 선행하여 계획 근거 마련 지원
- (쌍방향 소통을 통한 계획 환류) 분석 맵을 생활SOC 플랫폼에 탑재하고 시설 평가결과와 주민 의견을 차기 공급계획에 반영

2 생활SOC 사업의 3대 추진분야

분야 1.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3년간 국비 약 14.5조원 투자)

- **(공공체육)** 100세 시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활기찬 삶을 위하여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 체육관 :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 → ('22) 3.4만명당 1개(1,400여개)
 - 체육관 **13분(5.5km)→10분(4km)**, 수영장 **22분(9.1km)→15분(6km)**으로 추진
- **(생활문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확충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시설의 **지역격차 해소**
 - 기존의 단일화된 문화·교육시설에서 벗어나 여러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융복합 문화·교육시설** 확충(노후시설 리모델링도 적극 추진)
 -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시간을 **12분(5km)에서 10분(4km) 이내로 단축** 추진
 - * 공공도서관 :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 → ('22) 4.3만명당 1개(1,200여개)
- **(기반시설 확충)** 취약지역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 도시 취약지역, 농산어촌, 접경지역 등의 **지역단위재생사업***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생활SOC사업의 속도제고와 투자효과 극대화
 -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림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 취사·난방비 절감을 위해 **LPG배관을 보급**하고, **보행안전 확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 주차장 확충**

분야 2.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3년간 국비 약 2.9조원 투자)

- **(보육시설)** 質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공적 돌봄 지원 확대**

-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서울-지방간 **지역균형 확보**,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
 - * 국·공립어린이집(직장 포함), 유치원 확대를 통해 공보육 비율 '21년까지 40% 달성
- 학교-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현**
 - * 온종일 돌봄체계 공급계획 : (현재) 36.2만명 → ('22) 53만명 수준
- **(돌봄시설)**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간보호·재활치료·보건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공립요양시설 확충**
 - * 공립노인요양시설 : (현재) 110 개소 → ('22) 240여개소
- **(공공의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 의료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생활권** 기반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건강증진기반 마련**
 - * 주민건강센터 : (현재) 66개소 → ('22) 110여개소(시군구당 평균 0.5개소)

분야 3.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3년간 국비 약 12.6조원 투자)

- **(교통안전)**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행안전 개선, 사고위험도로 개선** 등 집중 추진
 -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8) 3,781명 → ('22) 2,000명 수준(OECD 상위 30% 수준)
- **(지하매설물안전)** 싱크홀, 지하열수배관 파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노후 상수도관, 열수배관 교체 지원** 등 추진
 - * 지하공간통합지도 : (현재) 8대 특·광역시 및 수도권 7개시 → ('22) 162개 시·군
- **(화재 및 재난안전)** 제천화재(29명 사망), 밀양병원 화재(47명 사망)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확보***, 우기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저류시설** 확대**
 -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 보강 : '22년까지 720여동 보강(필요시설의 약 50%)
 - ** 우수저류시설 : (현재) 취약지역 192곳 중 47.4% 설치 → ('22) 66.1% 설치
- **(생활환경)** 미세먼지, 석면 슬레이트 등 **공기질 개선**과 캠핑수요 증가, 여가·휴양문화 확산에 따라 **국립공원, 숲속** 등에 **다양한 야영장에 집중투자**
 - * 휴양림 (현재) 170개소 → ('22) 190여개소, 야영장 (현재) 2,097개소 → ('22) 2,150여개소

3

추진방식 혁신

- **(시설복합화)** 부처별·사업별 단절 추진이 아닌 복합화 추진으로 부지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 및 이용편의성 제고
 - (지역주도-중앙지원) 생활SOC 사업들을 메뉴판으로 제시, 지자체가 희망사업들을 골라 사업계획 제출, 부처와 지자체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후 범부처 공동 지원



- (주체별 역할) 균형위, 국조실, 중앙부처,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
 - (균형위) 균특법 규정에 따른 협약절차 이행(관계부처 결정, 의결 등), 각 지자체별 사업계획 취합, 협의·조정 중재 및 컨설팅 등

- ① 복합화 사업대상 시설확정 및 3개년 공급계획 조사(추진단·관계부처 협조)
- ② 복합화 모델/메뉴판·사업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③ 컨설팅지원체계(전문가, 관계부처 등) 구축
- ④ 사업조정위원회 구성, 지자체사업 접수·협약안 심의·의결

- (관계부처)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지자체 사업기획 컨설팅(요청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조정, 지자체와 협약체결, 예산배정 등
- (지자체)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부처들과 사업계획서 협의·조정, 투자협약 체결, 사업시행 및 정산 등

- **(지자체 유인)** 복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국·공유지 활용(학교부지 포함) 등 지자체 부담 완화

- (보조율 조정) ①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율을 상향 조정(현행대비 +10%p)하되, ② 복합화시설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

- '20년 예산편성 시기* 감안 시, 3개년계획 정부안 결정(4월) 시 보조율 상향방안을 함께 결정·지침하달

* 예산편성지침 하달(3월말, 기재부) → 지자체 수요 제출(4월말) → 부처안 제출(5월말)

- **(추진방식 다변화)**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시설, 필요지역 인근 유휴 국·공유지와 기타 공공시설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문제 해소
 - 학교부지·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모델을 표준화하고 업무협약 (기획, 건설 및 운영단계 전반에 걸쳐 협의체간 분담체계)을 통해 추진
 - * 학생-일반인간 이동동선 분리, 건설기간 안전, 시설물 소유·운영·관리 책임 분담 등
 - 생활SOC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 입지 규제를 완화
 - 유휴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감면 등 법령 개정 추진
 - **(디자인 품격 향상)** 국격 수준에 맞춰 공공시설물 건축시 디자인 측면에서 품격 제고방안 강구중 → 현안조정회의 상정예정(4월)
 - 시·도별 총괄건축가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SOC에 대해서는 기획 및 주민의견 수렴, 투자계획 심의, 설계, 건축까지 총괄 감독
 - * 국민체육센터(체육관+수영장),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연면적 1천㎡ 이상(예시) 시설 대상
 - 개별 사업별로는 사업비의 일부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시설 기획, 설계·시공 시 자문 등 담당하는 방안 검토 중
 - **(지역 참여)**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획수립, 설계·시공, 운영 등 쏠 과정 참여모델* 정립
 - * 주민대표, 총괄건축가,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 사회적기업의 지방세감면, 입찰가점, 수의계약 확대 등 제도개선 완료,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 종합대책' 마련 예정('19.上)
 - **(지속가능 운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① 先 자체 운영비 확보방안 강구, ② 後 2단계 재정분권 검토 시 운영비 부담완화방안을 함께 고려
 - **(자체 운영비 확보)** ① 상업시설(카페 등)을 입점시켜 수익 공유* ② 공익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지역사회로부터 운영비 조달
 - * 예) 지자체는 입점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입점업체(대형프랜차이즈직영 등)는 최저운영수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료와 순수익 일부를 사회공헌차원에서 환원
 - **(중앙지원)** 녹색건축물 건설을 통한 공공요금 부담 경감 유도
- ※ 도시재생플랫폼에 생활SOC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12월, 국토부)

생활SOC 3개년계획 이후 우리의 미래상

| 분야 | 시설 | 현재('18년말) | 미래('22년 착수기준) |
|-------|--------------|--|--|
| 체육 | 공공 체육관 | · 13분내 접근(963개, '17) * 53만명/개소, 선진국 40% 내외 | · 10분내 접근(1,400여개) * 34만명/개소, 선진국 60% 내외 |
| | 공공 수영장 | · 22분내 접근(406개, '17) * 126만명/개소, 선진국 25% 수준 | · 15분내 접근(600여개) * 8.5만명/개소, 선진국 55% 수준 |
| 문화 | 공공 도서관 | · 12분내 접근(1,042개, '17) * 5만명/개소, 선진국 70% 수준 · 열람실 위주, 노후 * 20년 이상 34% | · 10분내 접근(1,200여개) * 43만명/개소, 선진국 90% 수준 · 문화·돌봄 등과 복합, 노후시설 리모델링 |
| | 생활문화센터 | · 시군구당 0.6개(141개) | · 시군구당 1.3개(300여개) |
| 기반 시설 | LPG배관망 | · 1.3만세대 * 3개군, 136개 마을 | · 5.5만세대 * 13개군, 320여개 마을 |
| | 주차장 | · 연평균 1천면 공급 | · 3년간 1.1만여면 공급 * 110여개소 |
| 자녀 돌봄 | 공공부문 어린이집 | · 공보육 25.2% * 6,090개(수해아동 35.4만명) | · 공보육 40% * 8,600여개(수해아동 50.2만명) |
| | 국공립 유치원 | · 국공립 취원율 25.4% * 10,896학급 | · 국공립 취원율 40% * 12,900여학급 |
| | 은종일돌봄 (초등돌봄) | · 수해아동 36.2만명 * 초등돌봄교실 1.24만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 · 수해아동 53만명 * 초등돌봄교실 1.5만여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1800여개소 |
| 취약 계층 | 고령자복지주택 | · 2,426호 | · 4,000여호 |
| | 공공요양시설 | · 시군구당 0.5개(110개) | · 시군구당 1.1개(240여개) |
| 공공 의료 | 지역책임 의료기관 | · 없음 | · 40여개 지정 |
| | 주민건강센터 | · 시군구당 0.3개(66개) | · 시군구당 0.5개(110여개) |
| 안전 | 교통 | · 교통사고사망 3,781명 * OECD 32위/35개국('15) | · 교통사고사망 2천명대 * OECD 상위 30% 수준 |
| | 화재 | · 다중시설보강필요대상조사 | · 720여동 보강 (필요대상의 약50%) |
| | 지하매설물 | · 지하공간지도 15개 도시 | · 지하공간지도 160여개 도시 |
| | 재난 | · 우수저류시설 91곳 * 침수피해우려지역의 47.4% | · 우수저류시설 127여곳 * 침수피해우려지역의 66.1% |

Ⅲ. 분야별 주요과제

※ 시설별 확정물량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야 1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① 활기찬 삶을 위한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 국민체육센터와 실외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체육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1 국민체육센터

○ (현황)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획일적 구성이 아닌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모델화*된 체육시설을 확대 필요

* 생활밀착형(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생활권 장애인형, 근린형소규모,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준공 된지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민체육센터가 약 41%(200개소 중 81개)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리모델링 필요성 증가



○ (공급목표) 체육관 13분(5.5km) → 10분(4km) , 수영장 22분(9.1km) → 15분(6km)

| 구분 | 현재('17.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수영장 | 406개 (1개소당 12.6만명) | 600여개 (1개소당 8.5만명) |
| 체육관 | 963개 (1개소당 5.3만명) | 1,400여개 (1개소당 3.4만명) |

* 1개소 당 인구수 : 수영장(일본 3.3만명, 호주 3.3만명), 체육관(일본 1.4만명)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별도 추진('22년까지 120여개소)

2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 (현황) 수영장, 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과 더불어 야구장·축구장 등 급증하는 실외체육활동 수요 대비 공급 확충 필요

* (야구)클럽 2,728개, 회원 70,992명('11) → 클럽 4,985개, 회원 159,232명('16)
(축구)클럽 9,354개, 회원 521,243명('11) → 클럽 12,560개, 회원 607,300명('16)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욕구 반영과 인공암벽, 인라인스케이팅 등 레저스포츠 수요 반영필요



○ (공급목표) 야구장, 축구장은 서비스 반경 12km 이내, 30분 내 접근, 노인건강체육시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 등 다양한 체육인프라 조성

| 구분 | 현재('17.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야구장 | 269개 (1개소당 19만명) | 400여개 (1개소당 13.7만명) |
| 축구장 | 2,542개 (1개소당 2만명) | 2,640여개 (1개소당 1.6만명) |
| 노인건강 (게이트볼장) | 1,479개 | 1,600여개 |
| 레저스포츠 (인공암벽장) | 39개 | 50여개 |

* (야구) 1개소 당 인구수 : 일본 1.8만명, 호주 13만명
(축구) 1개소 당 인구수 : 호주 2만명, 영국 1.2만명

○ 실외체육시설과 도시공원을 복합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

* (예시) 약 5~15만㎡규모로 축구장(2면) + 야구장(2면) + 농구장 + 테니스장 + 레저시설(X스포츠, 암벽, 놀이터 등) + 도시공원

② 품격있는 삶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예술 활동 참여 등 능동적인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도서관

- (현황) 정보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줄어드는 등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통합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
 - *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하기 위해 조성된 작은도서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준공 된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이 전체의 약 34%이며, 열람실 중심으로 구성된 도서관이 많아 리모델링 필요성 증가



- (공급목표) 공공도서관의 접근시간을 12분(5km)에서 10분(4km) 이내로 단축, 작은 도서관은 기존 수요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보완재로 활용*
 - * 공공도서관 보급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과 생활SOC복합시설내 집중확충

| 구분 | 현재(17.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공공도서관 | 1,042개 (1개소당 5만명) | 1,200여개 (1개소당 4.3만명) |
| 작은도서관 | 6,058개 (1개소당 8.5천명) | 6,700여개 (1개소당 7.6천명) |

* 공공도서관 1개소 당 인구수 : 일본 3.9만명, 미국 3.4만명, 영국 1.5만명, 독일 1.1만명

- 순회사서* 파견, 기준미달 도서관 리모델링 등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방안 및 컨설팅 등의 지원정책 병행 추진

* 전문운영인력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강화

2 생활문화공간

- (현황) 워라벨 문화 확산 등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강연·연습·발표공간의 확대 필요
 - *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도 활용가능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내실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메이커스페이스, VR체험공간 등 최신 트렌드 반영 필요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자료·정보부족(81.7%), 체험장소 부족(81.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부족(83.6%)



- (공급목표) 생활문화센터를 기초지자체(시·군·구) 당 1개 이상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전용공간(꿈꾸는 예술터)은 광역지자체(시·도) 당 1개 내외 조성
 - 메이커스페이스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랩과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랩으로 구분하여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중심으로 배치 목표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생활문화센터 | 141개 (시군구당 0.6개소) | 300여개 (시군구당 1.3개소 이상) |
| 꿈꾸는 예술터 | 5개 | 15개 |
| 메이커스페이스 | 65개 | 360여개 |

-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 시 작은 공간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하여 추진
 - 특히, 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메이커스페이스나 VR체험공간을 복합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입지 강화

③ 골고루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단위재생사업

- 도시 취약지역, 농산어촌 등의 지역단위재생사업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생활SOC사업의 속도제고와 투자효과 극대화 필요



- 재생사업을 통해 거점 및 공공지원 역할을 할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생활SOC 공급이 원활하도록 추진

-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복합시설(어울림센터*), 생활SOC 포함사업 인센티브 부여, 주거지원형 생활SOC사업(소규모 주택 정비 연계) 등

* 공공서비스(창업지원 · 헬스케어 · 복지관 · 도서관 · 생활문화센터 등), 상업기능, 주거기능 등을 포함하는 복합 생활 SOC 시설

- (농산어촌 개발) 농산어촌 생활SOC 서비스기준을 제시하고, 생활SOC 인센티브, 농촌형 생활SOC 거점(브랜드: 다가치센터)* 조성 등

* 읍면 소재지에 거점복합시설을 두고 배후마을까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제 구축

- (어촌뉴딜) 생활SOC 사업 우대, 대합실 등 여객편의시설 복합화*, 어항 내 유희시설·부지와 연계한 생활SOC 유치 등

* 선착장, 대합실, 휴게시설, 주민편의시설, 상업시설 등 관련 서비스 집약·전달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누적) | '22년(착수기준, 누적) |
|--------|--------------------------------|---|
| 도시재생뉴딜 | 어울림센터 10개 *도시재생연계 생활SOC 98개 | 어울림센터 100여개 *도시재생연계 생활SOC 1,100여개 |
| 농산어촌개발 | 커뮤니티시설 488개 | 다가치센터 900여개(기존시설 포함) *마을회관 정비 1,000여개 이상 |
| 어촌뉴딜 | - | 여객복합편의시설 100여개 |

2 LPG배관망 구축지원

- (현황) 물리적 제약 및 경제성 부족 등으로 향후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 필요
- (공급목표) 도시가스 공급계획 없는 세대 중 인구 밀집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5.5만세대에 대해 LPG배관망 구축 추진



* (군단위) 13개군 39,853세대, (마을단위) 321개 마을 15,755세대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LPG 배관망 | 3개 군 136개 마을 (12,824세대) | 13개 군 321개 마을 (55,000여세대) |

3 주차장

- (현황)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 및 주민 간 갈등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주거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 시급
 -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고객과 지역 주민 부족한 주차공간 공급 추진
- (공급목표) '22년까지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 70% 미달지역 감축을 위해 총 1.1만면 조성('19.2월 수요조사 결과반영)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고, 5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은 주차 빌딩화 등 리모델링 추진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주거지 주차장 | - | 1.1만여면 추가확충 |
| 전통시장 주차장(확보율) | 74.4% | 100% |

* 전체 전통시장 1,441개중 주차장 설치 대상 : 1,291곳(100%)

-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 생활SOC와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및 시너지효과 도모

④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조성

◇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초등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된 공적돌봄 지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 (현황) 대다수 민간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 : 32.7만명
(’18.12월 기준, 국공립 정원대비 141%)



- (공급목표) 영유아 500명 당 1개소, 도보 5분 내 접근, ‘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아동 비율 40% 확충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국·공립 어린이집 | 3,602개 (20만명) | 5,700여개 (33.6만명) *’21년 달성목표 |
| 직장 어린이집 | 1,111개 (6.2만명) | 1,600여개 (8.5만명) |

-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역간 균형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 간 차등보조율 도입 검토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대상기업의 확대 추진

2 국·공립 유치원

- (현황)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우리나라 만3~5세 유아 136만명(유치원 취원 67.6만명, 49.7%) 중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4%(17.2만명), OECD 35개국 중 32위 수준(OECD 평균 67%)

○ (공급목표) '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18년 기준, 25.4%)

| 구분 | 현재('18.4월 기준) | '21년(착수기준) |
|---------|---------------|------------|
| 국·공립유치원 | 10,896학급 | 12,900여학급 |

○ 생활SOC복합시설 내 공간확보, 도시공원부지 등 신설부지 확보, 매입형·공영형·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방식의 공립확충 병행 추진

3 온종일돌봄체계(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 (현황)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영유아 보육 68.3% (215만 / 315만명) vs 초등돌봄 12.5% (33만 / 267만명)

○ (공급목표) 돌봄 서비스 인원을 '22년까지 53만명('18년 기준 36.2만명)으로 확대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다함께 돌봄센터 | 17개 (0.4천명) | 1,800여개 (9만명) |
| 초등 돌봄교실 | 12,398실 (26.1만명) ※ '18.4월 기준 | 15,000여실 (약 31만명) |

○ 지역아동센터(8.2만명), 방과후아카데미(0.6만명),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22년까지 1만명을 확대하고, 활용가능교실*(1,500실, 3만명)은 선도사업 완료('20.上) 후 추진

*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기관 설치·운영

○ 맞벌이 가정 등의 수요 및 학교·지역 여건을 고려, 초등돌봄교실 대상(초등 1,2학년 위주 → 초등 전학년)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시간 연장 추진

⑤ 따뜻하게 더불어 살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시설의 확충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공립 노인요양시설

○ (현황)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립요양시설 확충으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사회적 입원) 방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공립요양시설 130개소 확충



○ (공급목표) 현재 110개소인 공립시설을 '22년까지 240개소로 확충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공립요양시설 | 110개 (78개 시군구거주자) | 240여개 (226개 시군구거주자) |

2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 (현황)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상층부)과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저층부)을 복합설치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50%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등이 주택 수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주택 및 복지공간 제공

○ (공급목표) '22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4,000호 확충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고령자 복지주택 | 2,426호 (20개 시군구거주자) | 4,000여호 (40개 시군구거주자) |

⑥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

◇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어디서든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책임의료기관

- (현황)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존재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OECD 최하위, '16)

- (공급목표) 전국을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개 지역(중진료권)으로 분류하여 종합병원급 공공/민간병원 지정·육성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지역책임 의료기관 | - | 40여개 |

2 주민건강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 (현황)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예방 및 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전체 사망자의 81%가 만성질환자('15 통계청), 진료비는 매년 8.1%씩 증가 추세('16)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 질병예방·건강증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 인프라는 절대 부족

- (공급목표) 시군구당 평균 0.5개소 목표로 '22년까지 40여개소 공급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주민건강센터 | 66개 | 110여개 |

* 일본의 경우 전국 보건센터(보건소 별도) 2,705개소('09년 기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용 빈도가 높은 건강증진 사업(영양지도, 임신부·신생아 방문지도 등) 수행

3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 (현황)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는 시장에 의한 공급 한계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OECD 최하위) [’16]



- (공급목표) 거점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 중증장애아동 및 기능회복시기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및 권역재활병원 확충
 - 중앙-권역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지정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 - | 병원 3개(3개 권역) 센터 6개(4개 권역) |
| 권역재활병원 | 6개(6개 권역) | 9개(9개 권역) |

4 건강가정지원센터

- (현황) 가구원 수 축소, 맞벌이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형태 다양화, 소규모화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 확대·강화 필요



- (공급목표) 별도 분리 운영 중인 시설 모두 '22년까지 통합운영하는 목표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05년부터 '14년까지 총 151개소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14년 이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 구분 | 현재('19.3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건강가정 지원센터 | 독립 24개, 통합 183개 | 통합 230여개(24개 기능보강 포함) |

※ 핵심 가족서비스 관련 설치 표준모델, 지원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후 공지

⑦ 재난·재해·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구축

◇ 국민 일상생활 영위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분야 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누구나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교통안전

- (현황)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인명피해 및 사회적 비용(연 26.5조) 저감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 '15년: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9.1명(OECD 평균의 1.7배 수준, 35개국 중 32위), 보행자 사망사고 10만명당 3.5명(OECD 평균의 3.2배, 34위)



- (주요사업) 학생보호 등 보행안전시설 확충, 위험도로 개선, 줄임쉼터 설치 및 도로 유지보수

* 도로 안전환경 및 구조물 기능개선, 철도 승강장, 건널목, 방음벽 등 안전시설 확충

- (기대효과) 교통사고 감소 및 시설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관리비용 감소

2 지하매설물안전

- (현황) 최근 KT 통신구 화재, 온수관 파열, 가스 누출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 증가

* 최근 주요 사고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18.11.24.), 고양 백석역('18.12.4.)·서울 목동 ('18.12.11.) 온수관 파열, 부산 마린시티 가스관 파손 사고('18.12.10.) 등



- (주요사업) 지하시설물 통합지도 구축, 노후 상하수도 정비*, 장기 사용 열수송·가스관 정비지원

* 노후상수도 정비, 광역상수도 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정밀조사

- (기대효과) 노후 가스·열수송·상하수관 교체를 통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 불편 해소

3 화재 및 재난안전



- (현황)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인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재난 예방투자 확대 필요

- 제천화재(29명 사망), 밀양병원 화재(47명 사망), 대구서문시장 화재(469억원 피해)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확보 시급 및 예방 강화

* 최근 10년간('08~'17) 사회재난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25), 가축질병(10), 산불(8) 등 78건

- (주요사업)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 보강(720여개소*),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40여개소)

* 피난약자 이용시설 260여동(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 460여동(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전통시장 1,480여개 전수 안전점검, 310여곳 노후전선정비, 560여곳 화재알림시설 설치

- (기대효과)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극대화, 화재 인명피해 예방,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구축, 화재 발생건수 및 화재 피해액 감소

⑧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속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곳이 곳곳에 확충되어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1 생활환경

- (현황)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문제로 국민 삶의 질 지속 악화

* OECD 삶의질 지표 ('15년) 25위 → ('16년) 28위
→ ('17년) 29위, 특히 환경분야 36위(주거 6위)



- (핵심사업) 석면 슬레이트 철거

(13.5만여동),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시설 설치

*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대책,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기대효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안전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삶의 질 개선

2 휴양림·야영장

- (현황) 캠핑수요 증가, 여가·휴양문화 확산, 미세먼지 증가 등에 따라 지역 인근 울창한 산림에서 산림휴양을 즐기려는 꾸준한 수요 증가 대비 휴양림·야영장 수가 부족



* 휴양림 이용객(만명) : 1,121('10) →

1,395('14) → 1,531('18), 야영장 연간 이용자 수 1,100만명('17.12월), 국립공원 야영객 8년간 1.9배 증가('10년 32만명 → '18년 61만명)

- 휴양림과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 및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시설의 부족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정비도 필요

- (공급목표) '22년까지 기초 지자체별 자연휴양림 1개소 조성, 국립공원야영장은 이용수요와 더불어 환경훼손 최소화 고려하여 추진

| 구분 | 현재('18.12월 기준) | '22년(착수기준) |
|---------|------------------------|--------------------------|
| 휴양림 | 170개 (이용객 1,531만명) | 190여개 (예상이용객 1,800만명) |
| 국립공원야영장 | 40개 | 50여개 |
| 숲속야영장 | 3개 | 10여개 |
| 야영장 총수 | 2,097개 (1개소당 2.4만명) | 2,150여개 (1개소당 2.3만명) |

* 일본은 84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운영, 전체 야영장 수 / 1개소당 인구 : 미국 (20,000개 / 1.5만명), 캐나다(4,231개 / 0.8만명)

3 도시공원

- (현황)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공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 등 도시의 허파로서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 재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계획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20.7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될 예정

- (공급목표) 선별된 공원조성 필요지역을 지방재정으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을 촉진
- 생활SOC사업, 정부내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공원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연계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확대 추진

* (예시) 유치원, 로컬푸드센터(식품접객업 범위 내), 주민건강센터 등

IV. 추진방식 혁신

1 생활SOC 시설 복합화 촉진방안

- ◇ 지자체 주도 희망시설의 복합화 촉진을 위해 사업 투자물량 사전조사부터 정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범부처 공동지원
 - * 독립된 생활SOC를 복합화할 경우 토지매입비, 공용공간 등에 대한 건축비 절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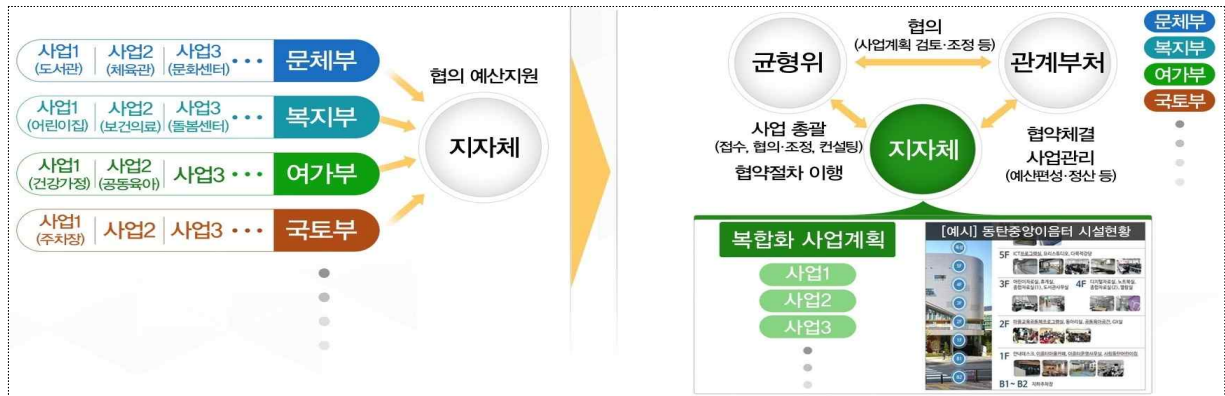
- **(현황)** 지자체는 각 부처 사업별 공모를 통해 개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후 타부처 사업에 추가 공모하여 여러 시설을 복합화하고 있음
 - (공급체계) 중앙부처의 사업별 조건이 다양*하고 1개과 1개 시설을 담당하는 칸막이 방식으로 다수시설의 복합화 지원에 한계
 - * △특별회계, 기금 등 다양, △국고보조율 30~70% 차별 지원, △사업공모시기 상이, △소관부처 사업마다 예산배정 후 총사업액을 나눠 정산해야 하는 문제 등
 - (사업추진 방식) 각 사업별로 연도별 물량을 설정하여 매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 복합화 시 집행·정산 등 애로 발생

< 생활SOC사업 중 복합화 사업대상 시설안 >

| 부처 | 시설(사업)명 | 회계 | 국고보조율 | 사업추진 방식 |
|-----|-----------|----------|----------|---------|
| 문체부 | 공공도서관 | 균특(지역자율) | 40% | 시도 자율편성 |
| | 작은도서관 | 균특(지역자율) | 70% | 시도 자율편성 |
| | 국민체육센터 | 체육진흥기금 | 30억원 | 공모 선정 |
| | 생활문화센터 | 균특(지역자율) | 40% | 시도 자율편성 |
| 복지부 | 어린이집(국공립) | 일반회계 | 50% | 공모 선정 |
| | 주민건강센터 | 농특회계 | 66.7% | 공모 선정 |
| | | 건강기금 | 66.7% | 공모 선정 |
| | 다함께돌봄센터 | 일반회계 | 50% | 공모 선정 |
| 여가부 | 공동육아나눔터 | 양평기금 | 50%(운영비) | 공모 선정 |
| 국토부 | 주거지주차장 | 균특(지역자율) | 50% | 시도 자율편성 |

□ (개선방안) 생활SOC 복합화 대상사업을 메뉴판으로 제시, 지자체가 희망사업들을 골라 사업계획 제출 시, 협약 후 범부처 공동 지원

※ 노인, 청소년 시설, 작은 영화관 등 지방비 자체 추진사업도 포함 가능



○ (주체별 역할) 균형위, 국조실, 중앙부처,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 필요

- (균형위) 균특법 규정(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협약절차 이행(관계부처 결정등), 각 지자체별 사업계획 취합, 협의·조정 중재 및 컨설팅 등
 - * 사업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컨설팅체계구축, 지자체 사업 접수·협약안 심의·의결 등
- (관계부처)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지자체 사업기획 컨설팅(요청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조정, 지자체와 협약체결, 예산배정 등
- (지자체) 복합화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부처들과 사업계획서 협의·조정, 투자협약 체결, 사업시행 및 정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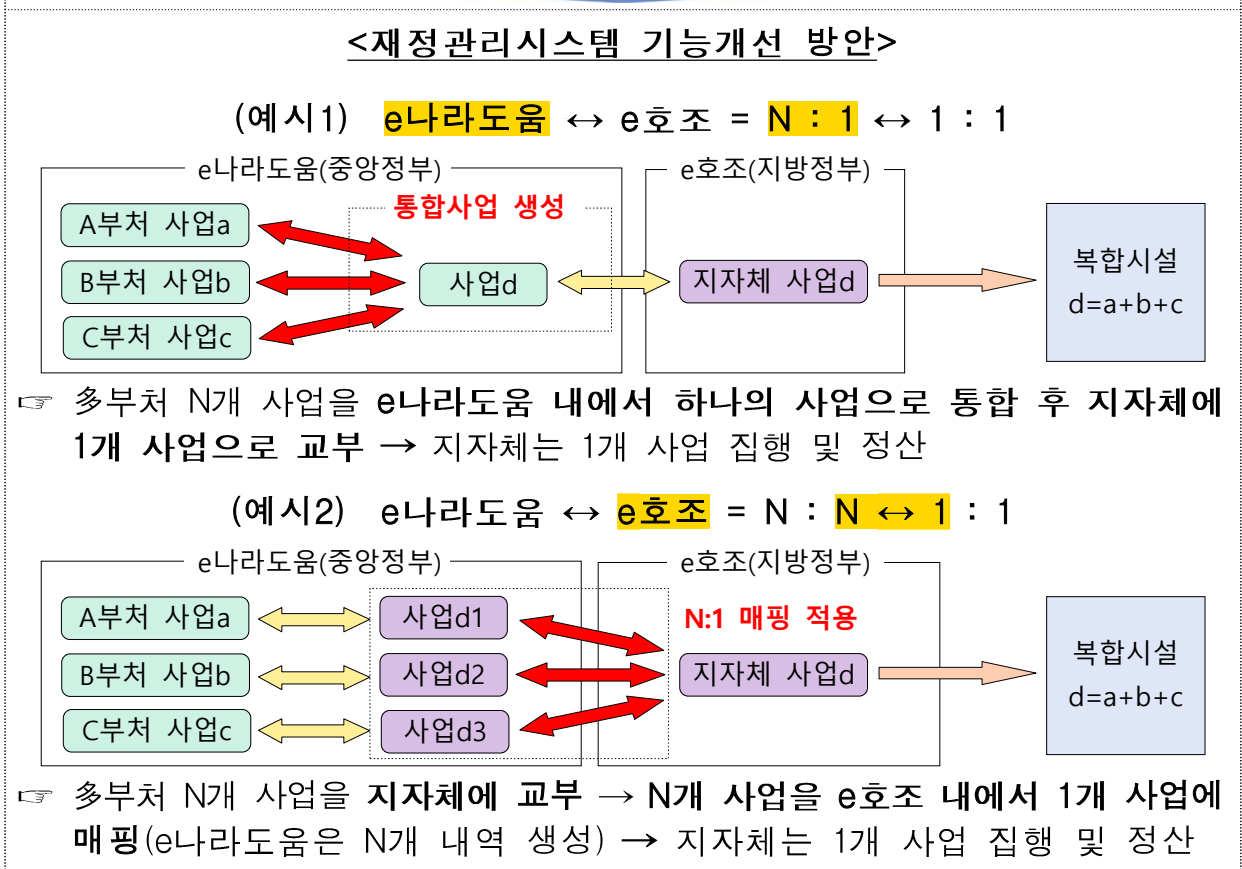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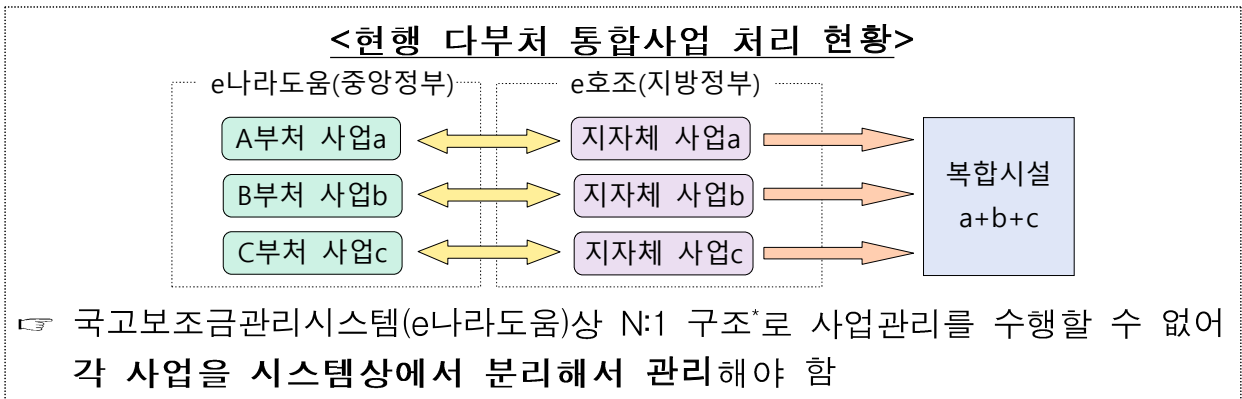
□ (제도개선) 대상시설의 원활한 복합화 추진을 위해 사업별·지자체별 3개년 전체 투자물량 사전 협의 및 예산집행·정산 간소화 등

○ (투자계획) 3개년간 복합화 대상 시설별·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협의하여 지자체의 3개년간의 복합화 계획수립 지원

- 균형위와 각 부처는 지자체가 수립·제출한 복합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 결정(지역주도-중앙지원)
-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소관 부처·기재부 등이 함께 “생활 SOC 복합화 추진 투자협약(가칭)”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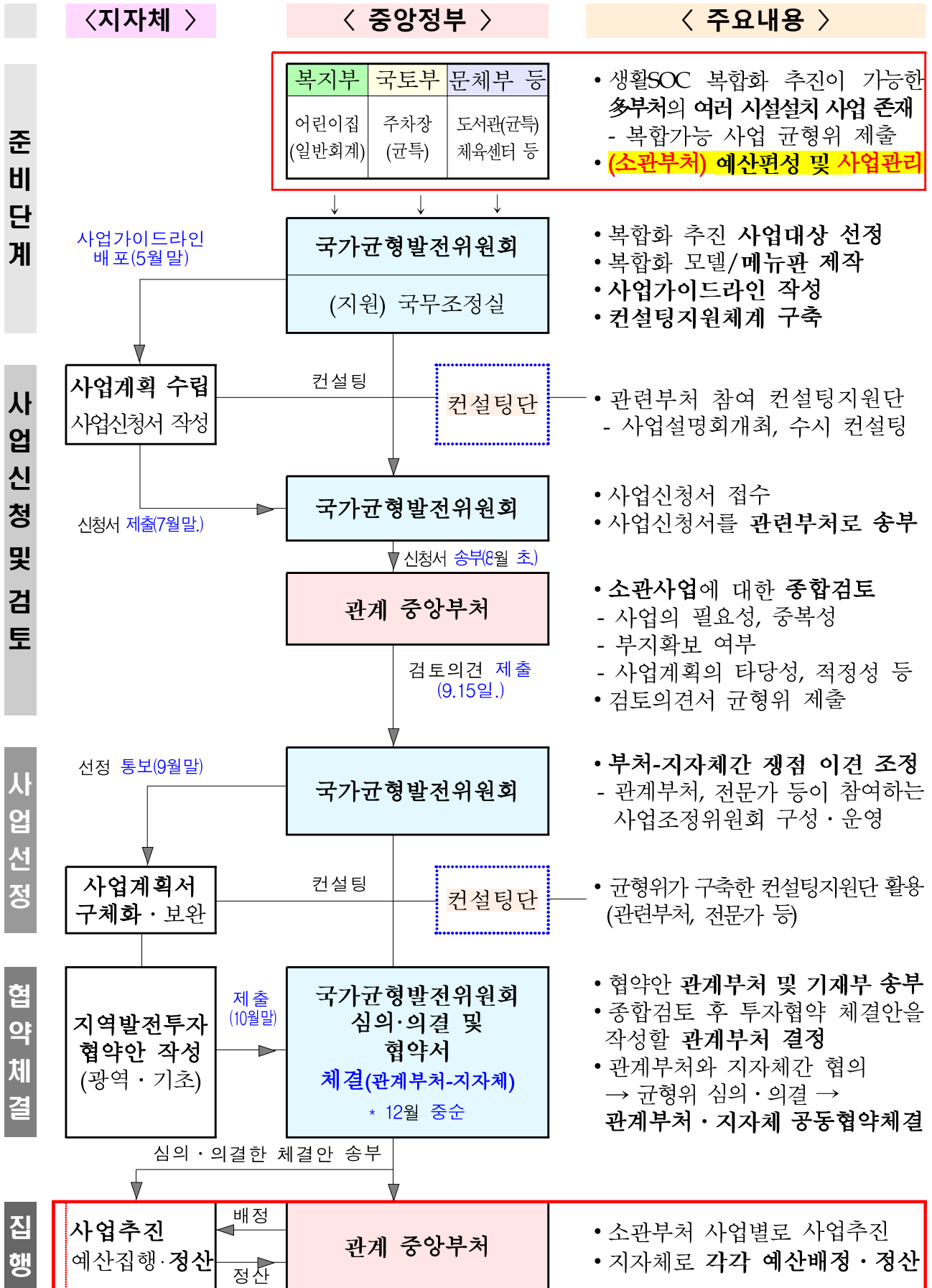
* (현행) 각 사업별로 연도별 물량을 설정, 매년 지원대상(지자체) 선정 → 각 지자체는 중장기 국고지원 여부 불투명으로 중장기 복합화 계획수립 애로

- (지방투자심사) 복합화시 대부분 사업이 지방투융자심사 대상에 해당
→ 투자심사 횟수 확대, 절차 간소화로 원활한 복합화 추진 지원
- (집행·정산) 부처별 업무협의 및 사업별 정확한 구분 곤란 →
업무협의 과정 단순화 및 통합 지침 마련으로 집행·정산 기준 명확화
 - 한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N)으로 단일 복합건물 건축시 일괄
단일 계정을 설정 後 사업비 비율(1/N)로 일괄 정산 방안 검토
 - * 필요시 e-나라도움·e-호조 시스템 기능개선, 보조금관리지침 개정 등 추진



참고1

생활SOC 시설 복합화 추진(안)



참고 2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일정(안)

| 구 분 | '19.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S O C 추진단 | 3개년 계획 발표 (4. 11.) | 지자체 복합화 수요조사, 부처기재부 전달 (5월 중) | 복합화 사업 추진 지원 (5~12월) | | | | | | 다음 년도 복합화 기초조사 (12~3월) |
| 균형위 | | 가이드라인 시달 (5월) →지자체 | 지자체 사업신청서 접수 및 복합화 컨설팅 (6~7월) 지자체→균형위, 균형위↔지자체 | 사업신청서 부처송부, 사업조정·확정 (8월) * 균형위 | 지역발전 투자협약서 접수 (10월) 지자체→균형위 | 협약체결 심의의결 (11월) | 투자협약 체결 (12월) 부처↔지자체 | | |
| 중앙부처 | | 예산 요구안 제출 (5월말) →기재부 | | 사업검토, 의견제출 (8.15.~9.15.) →균형위 | 국고보조금 가내시 (~10.15.) →지자체 | 협약서 의견제출 (11월) →균형위 | 투자협약 체결 (12월) 부처↔지자체 | | |
| 기재부 | 부처 사업예산 요구안 접수 (5월말) | 정부안 편성을 위한 사업심의·확정 (9.2.) | | | | | | | |
| 행안부 | | | | | | 수시 중앙 투자심사 (10~11월) * 중앙 투자심사위 | | | |
| 시도 시군구 | | | 복합화 사업계획 신청 (6~7월) →균형위 | | | 투심의리 (→시도, 행안부) 자체투심, 투자협약서 제출 (→균형위) (10월) | 중앙투심 대응 | 투자협약 체결 (12월) 부처↔지자체 | |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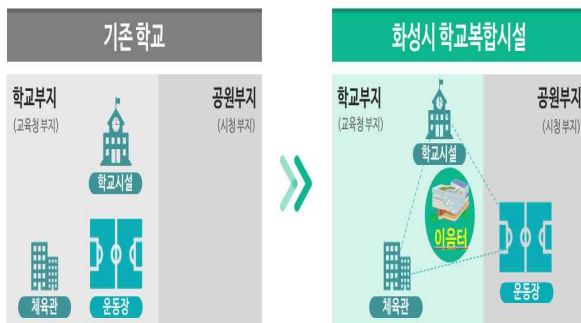
표준·거점형 생활SOC 복합화 시설(안)

□ 표준 공간구성(안)

| 시 설 명 | 선정 사유 |
|------------------|---|
| (작은)도서관 | 지식·문화 기본시설로서 생활SOC 복합공급 시 기본 플랫폼시설, 이용 빈도가 높으며 외국대비 낮은 공급수준(1개소당 서비스 인구: 선진국 1~4만명 VS 한국 5만명) |
| 실내체육관 | 생활체육 기본시설로서 생활SOC 복합 공급 시 기본 플랫폼시설, 이용 수요와 빈도가 높으며, 외국대비 낮은 공급 수준 |
| 생활문화센터 |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제공 가능, 국민체육센터·도서관 등과 복합 공급 시 시너지 효과 |
| 다함께 돌봄 (육아돌봄 포함) | 초등 돌봄교실과 함께 초등자녀 필수 방과후 돌봄시설(저출산 대책 핵심시설)로 이용수요와 빈도가 높고 타 시설과 복합 공급 |
| 주차장 | 시설 이용자 및 주변 거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

□ 현장 우수사례(동탄 중앙이음터)

<학교복합시설 이음터>



<동탄중앙이음터 시설현황>

옥상 옥상조경, 태양광발전판

5F ICT프로그램실, 요리스튜디오, 다목적강당

3F 어린이자료실, 휴게실, 종합자료실(1), 도서관사무실

4F 디지털자료실, 노트복실, 종합자료실(2), 열람실

2F 마을교육공동체프로그램실, 동아리실, 공동육아공간, GV실

1F 안내데스크, 이음터민원카페, 이음터운영사무실, 시민동터어린이집

B1~B2 지하주차장

2

추진방식 다변화

(1) 학교부지·시설 복합화

□ **[현황]** 학교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속히 공급 가능하며 동시에 교육수요도 충족 가능

○ **(현황)** '99년 서울 금호초를 시작으로 체육관(91개소), 주차장(26개소), 도서관(5개소), 문화센터(4개소) 등 총 126건*의 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

* 서울(99건) > 부산(15건) > 경기(5건) > 경남(4건) > 인천(1건), 대전(1건), 강원(1건)

('18, 우수사례) 경기도 화성시, 다원중학교와 주민복합시설(다원이음터)는 학교와 복합시설을 연결통로로 이어 대강당, 실내체육관, GX룸, 소극장, 요리 스튜디오,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

* 사업비 203억, 연면적 11.864㎡ B1~4층(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위탁운영)

○ **(문제점)** 현재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장간의 협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확대 추진에 한계

◇ **(관리책임)** 복합시설 관리 책임자가 대부분 학교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비 및 관리책임 부담에 따른 사업 기피

-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파손과 유지관리에 대한 학교장 부담 가중

◇ **(교육활동 제한)** 복합시설이 일반인 위주로 운영될 경우, 학생 체육활동 등 교육활동에서의 사용 제한 우려

◇ **(예산부담)** 교육청은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추가 자원부담 곤란*, 지자체도 추가 자원부담에 난색

* 현재 교부되는 학교 신설비 교부금만으로는 학교용지 확보 및 교사(校舍)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만 충당 가능

□ **[개선방안]** 법적으로 복합화는 가능하므로*,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 걸친 학교 협력모델을 표준화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복합화 촉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 ('08년 개정 ; 복합시설 설치 가능)

- (기획단계) 복합화 사업초기 단계에 학교·교육청·지자체·시설 소관 부처 등 협의체 구성 및 다자간 협약서(MOU) 체결 후 사업 진행
- (공급단계) 설계 시 일반 이용자와 학생간 이용동선 분리(전용 출입구, 이동로), 건설기간 통학로 안전 확보
- (운영단계) 시설물에 대한 소유·운영·관리 책임 분담체계 확립

<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방안 >

- (체결주체) 학교장 - 교육청 - 지자체 - 국고보조 소관부처
- (주요내용) 설치·건축·귀속, 운영주체 및 관리 방식 전반에 걸친 합의사항
 - (사업내용) 복합시설의 구성 및 세부시설별 규모, 총사업비 등
 - (비용분담) 건설 및 운영비용 분담방안(예: 학교-부지 제공, 지자체·부처-건설비)
 - (소유권) 건물과 토지의 소유관계(예: 부지-학교 소유, 건물-지자체 소유)
 - (책임분담) 건설-운영단계의 책임분담(예: 지자체가 건설·운영, 학교장 의견 반영)
 - (설계) 일반이용자-학생간 이용동선 완전 분리, 설계에 학교 의견 반영 등
 - (시설운영) 복합시설의 관리·운영 주체 선정방안, 시설 운영시간(학교 우선 사용 원칙, 최소 일반 개방시간, 일반 개방시간 제한 기준 등), 이용자 출입관리 등

□ [향후계획]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 (단기) 복합화지침 배포 및 복합화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발굴, 시범사업(마을교육공동체학교, 국립대학 시설·부지 활용) 추진('19.6~)
 - (복합화지침) 참여주체간 표준업무협약(MOU)안 및 복합화 추진 지침 배포 및 홍보('19.6~)
 - * “생활SOC사업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방안 정책연구 결과('19.6)”를 기반으로 업무 협약 시 주요 고려사항을 담은 지침 배포
 - (복합화 수요조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존 및 신축·증개축 학교의 복합화 수요를 조사('19.상)하여 지자체 수요와 연결('19.하)
- (중장기)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복합화건축물 건립을 위해 조례 제정, 법률 제정 등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 * 복합시설 운영 주체·기준(관리책임 명확화), 교육에 우선 사용, 학생안전 대책, 회계 투명성 확보, 시설 설치 시 자원 지원, 시설 건축·귀속 관련 사항 등

참고 1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1.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건립(초·중등시설 복합화)

- (사업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지원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학교 조성
- 학교 신설 및 개축 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 복합화 추진
* 평생교육(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문화체육(체육관, 수영장) 등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설
- (공급목표) '22년까지 매년 3교*, 총 9교(3,150억원)
* '20년(법령제정 이전)까지 시범사업 추진, 법령 제정 후에는 공급목표 등 변동 가능

| 구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비고 |
|---------------|-----------------|-----------------|-----------------|-----------------|-----------------------|
|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건립 | 9교 (3,150억원) | 3교 (1,050억원) | 3교 (1,050억원) | 3교 (1,050억원) | 신축 및 개축수요 시 복합화 우선 지원 |

※ 교당사업비 : 350억원 = 학교용지 확보 및 교사신축 250억원(교부금) + 복합시설 100억원(국비+지방비), 단 복합시설비는 추후 변동 가능

- (대상 선정방법) 지역사회의 수요, 사용빈도, 복합화 가능 및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신·개축 시 학교시설 복합화 우선선정
※ 단, 대상학교가 많을 경우 지자체 등 타부처와 MOU 체결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2. 국립대학 시설·부지 복합화

- (사업내용) 국립대학 내 생활 SOC 시설*을 개선 후 개방 또는 신축을 통해 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 대학 내 생활 soc 보유 현황(사학진흥재단 정보공시 자료 활용, '18.4.1.기준) (단위 : 개)

| 구분 | 체육시설 | | 문화시설 | | | 평생교육시설** | 계 |
|-----------|----------|------|------|-----|-------|----------|-----|
| | 체육관/강당 등 | 운동장* | 도서관 | 박물관 | 공연장 등 | | |
| 건물 수(39교) | 83 | 39 | 71 | 27 | 10 | 15 | 245 |

* 운동장 : 대학별로 1개소,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을 별도로 사용중인 건물

- (검토대상) '22년까지 총 44개(총사업비 3,911억원) 시설 복합화
- (기존시설) '22년까지 매년 7개(454억원) 내외, 총 30개(1,800억원)
- (신규시설) '22년까지 매년 4개(598억원*) 내외, 총 14개(2,111억원)
* '15~'18년에 반영된 신규시설 사업의 평균 총사업비
- (대상 선정방법) 대학·지역사회의 수요, 사용빈도, 복합화 가능성 및 사업 완료 후 개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 선정

□ **국내 사례**

- ◆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 서울 도곡초**
 - ▶ 도곡초등학교 유희부지에 복합시설을 건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복합시설 동시 사용
 - ▶ 소유권이 교육감에게 이전되어 도곡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복합시설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복합시설 사용료 지불
- ◆ **도시계획 및 학교설립 시부터 계획된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 경기 동탄중앙초**
 - ▶ 동탄신도시 개발 시부터 지자체(화성시) 주도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추진
 - ▶ 학교용지 내 복합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시 사용하고, 인근 공원을 학교의 운동장으로 활용 중
 - ▶ 동탄중앙이음터는 화성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이음터 관리·운영중

□ **해외 사례**

- ◆ **중학교 시설에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복합화 : 도쿄 하루미중학교**
 - ▶ 학교시설의 노후화 및 복지(보육·노인)시설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학교에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복합화(체육관·운동장 개방)
 - ▶ 계획 당시부터 '학교건설준비협의회'를 설치하여 상호 이해 및 합의를 통해 복합화 추진, 시설 행사 시 상호 초대하는 등 시설 간 교류 실시 중
- ◆ **초등학교 시설에 평생학습관·도서관 복합화 : 사이타마현 시키초등학교**
 - ▶ 노후화된 학교시설·평생학습관·도서관 개축이 필요하고 평생학습시설 요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평생학습관·도서관 복합화
 - ▶ 개축 시 주민과 학생 동선을 엄격하게 분리 유도하여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시 시민 등으로부터 의견·아이디어를 모아 적극 반영

(2) 다른 공공시설 사업과 연계

□ **[추진방안]** 생활SOC 시설간 또는 다른 공공시설사업과의 연계 공급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너지 창출

*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공공청사 재건축 시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난지도, 문암생태공원 등)

①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으로 해제('20.7) 예정인 도시공원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매입·활용하여 생활SOC를 공급하고 주변은 공원 조성***

* 복합생활체육공원(축구장·야구장·테니스장 포함), 도시 바람길숲, 미세먼지숲 등

- 도시공원에 규제를 완화*(~'19.10, 국토부)하여 주거지 주변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内に 생활SOC를 공급

* (도시공원시설 범주 확대) 유치원, 주민건강센터, 로컬푸드센터 등 추가

** (현행 도시공원시설 범주) 야영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수목원, 유희시설, 운동 시설, 자연체험장, 도서관, 독서실, 온실, 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복지관, 수련시설, 기숙사, 어린이집, 편익시설, 공연장 등

② **(주차장) 기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지상에 생활 SOC를 건설하거나 다른 공공시설 건설 시 지하주차장 추가 건설**

-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타 시설사업 연계 시 비용분담,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지침 마련(~'19.5, 국토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지하 3층~1층 주차장, 2층 도서관, 3층 가족지원 센터), 강동구 천호동 공영주차장(지하3층~1층 주차장, 2층 유아전용도서관)

* (예시 1) 도서관 건립 시 법정 주차대수 충족을 위해 지하 2층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지하 3~4층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에 개방

* (예시 2)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접주택 간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지하주차장 통합 건립 시 비용 지원(행복청 사례)

* (예시 3) 마을 공동주차장, 간선도로 지하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폭 넓게 검토

③ (노후공공청사) 지자체의 노후 공공청사 등을 「공공시설(청사, 생활SOC) + 행복주택 +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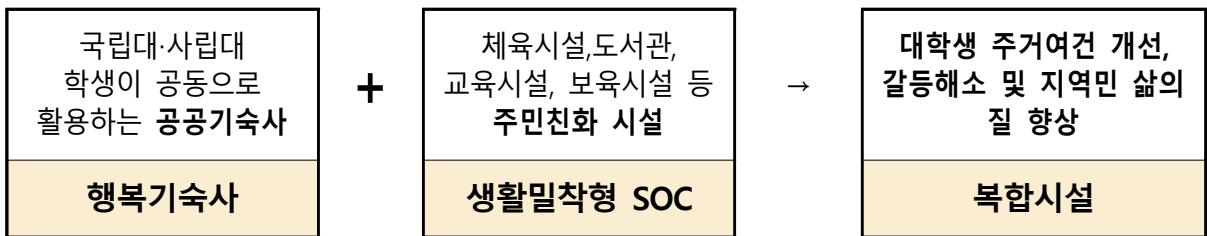
- 사업 촉진을 위해 LH 등 중앙공기업 주택기금 용자 지원 확대, 지방공사 타당성검토 면제(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검토
- 지자체·사업시행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구역 외에도 비주택 부분(청사+수익시설 등)에 주택도시기금용자 확대*

* 현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內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기금용자 가능

④ (연합기숙사) 지역주민 반대*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SOC 시설과 복합화를 통해 갈등 해소** 및 공급확대

* 동소문동 행복기숙사('17.11월 공사중단), 장학재단 연합기숙사(허가지연) 등

**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많으나, 건설원가 상승에 따라 수용 곤란함 (기숙사비 인상) → 생활SOC 부분은 국고 지원을 통해 주민요구 일부 수용



- 연합기숙사와 생활형 SOC 복합화 시 생활SOC 건립비용 국고(지방비 매칭) 지원방안 마련(~'19.5, 교육부-문체부 등 관련부처 협조)

□ 향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책 마련('19.4월, 국토부)
 - 도시공원 등 관련 부지확보 방안, 생활SOC와 공원 연계제도 개선 포함
- 주차장, 연합기숙사 등 연계방안 및 도시공원 규제완화방안 마련 ('19. 6월, 국토부·교육부)
- 다른 공공시설 사업과 생활SOC 연계 지속 추진('19.6~)

(3) 국·공유지 활용

- **[현행]** 생활SOC 공급이 필요한 지역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및 예산 절감 가능

*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 11.1)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3개소 / 국방부 관사, 선거연수원 등 활용 검토 / 국·공유재산 기부채납 무상사용제도 활용 등

- **[개선방안]** 지자체가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생활SOC”를 직접 확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사용허가 기간 연장 등 현행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방향 >

①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현행)**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기부조건 또는 매각대금 분납 중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 허용)

- **(개선)** 지자체가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경우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사용기간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국가에 기부

②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기간 연장

- **(현행)** 국유지의 최초 사용허가(대부)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제한

- **(개선)** 지자체가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기간 연장

③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현행)**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 사용이 원칙, 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공용·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 시에만 사용료 감면 가능

* 사용료는 일반 사용료의 절반(재산가액 5%→2.5%)을 부과(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개선)** 지자체가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 감면

3

국고보조율 조정 : 지자체 조기투자 및 복합화 유인

- **[배경]** 생활SOC 복합화 추진 가능 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매칭사업에 해당
 - 국고보조율이 다양, 다수의 시설 보조율은 他 사업에 비해 낮거나 용지매입비 지원 불가로 지자체 부담이 높은 실정

- **[방안]** 생활SOC 구축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신속·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조정
 - ☞ 3개년계획('20~'22년) 시행동안 한시적으로 생활SOC 중점시설을 복합화하는 경우에 한해 국고보조율 현행대비 +10%p 가산

<생활SOC 복합화 추진가능 시설 복합화 時 보조율 조정안>

| 중점시설명 | 관련사업명 | 부처명 | 보조율 | |
|-------------|-----------------|-----|------------------|------------------|
| | | | 현행 | 조정안 |
| 국민체육센터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문체부 | 정액 | 한도인상 |
| 도서관(공공, 작은) | 공공도서관 건립 | 문체부 | 40% | 50% |
| | 작은도서관 조성 | 문체부 | 70% | 80% |
| 생활문화센터 |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 문체부 | 40% | 50% |
| 주거지주차장 | 주차환경개선 | 국토부 | 50% | 60% |
| 국공립 어린이집 | 어린이집 확충 | 복지부 | 50% | 60% |
| 돌봄센터 | 다함께 돌봄 사업 | 복지부 | 서울 30% 지방 50% | 서울 40% 지방 60% |
| 주민건강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복지부 | 66.7% | 76.7% |
| | 농어촌보건소 등 시설보강 | 복지부 | 66.7% | 76.7% |
| 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여가부 | 관계부처간 논의 중 | |

□ 향후계획

- 복합화 대상 생활SOC시설별 조정보조율 확정 및 공지('19.4월 이후)

4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운영

◇ 지속가능운영 : 先 자체 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 강구, 後 국가 지원방안

(1) [자구책]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수익시설(retail shop)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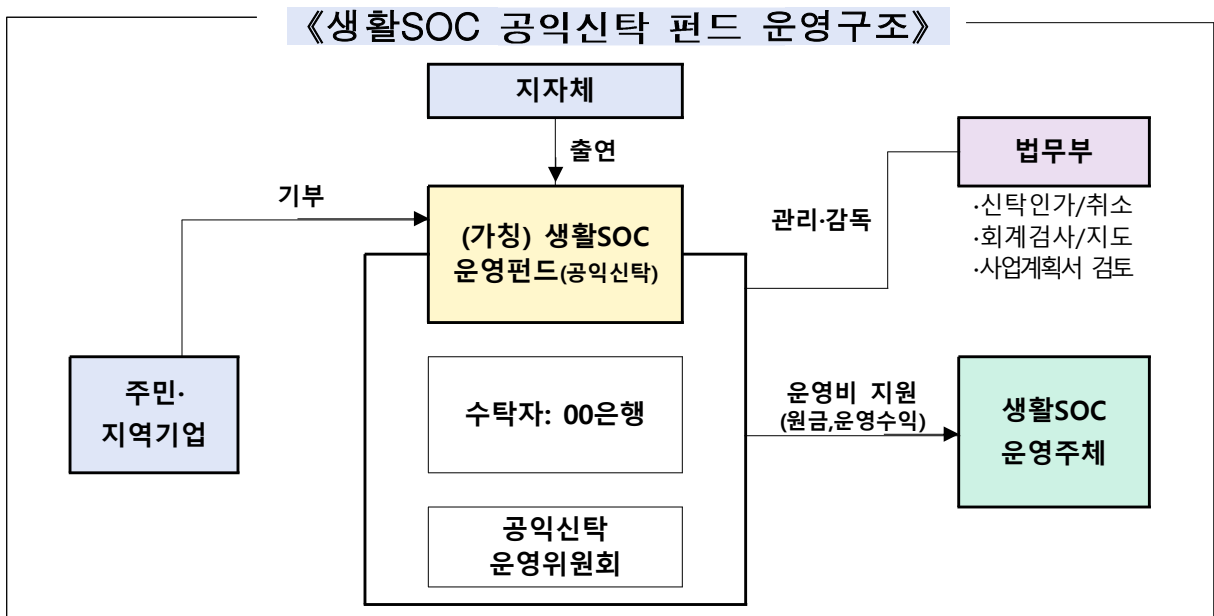
- (현 황) 기존 생활SOC 내 자체 수익구조 부재와 낮은 수준의 이용료 설정에 따른 만성적자 → 시설 운영 기반 약화
- (개선방안) 생활SOC 內 ‘핵심점포(Key tenant)’로 수익시설(카페, 패스트푸드음식점 등) 유치 →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로 운영부담 ↓
 - (유치방식) 생활SOC 운영주체와 주민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직영) 간 입점 협약 체결
 - 대형업체 유치를 통한 집객효과로 시설 이용빈도가 제고되는 동시에 입점업체의 매출액도 상승하는 상호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 (협약내용) 운영주체는 입점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맹본부는 최저운영수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료와 순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생활SOC 관리·운영비용으로 환원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분석(한국일보, '17.7)》



[2] [자구책] 지역사회로부터의 운영재원 조달

- (현 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운영재원조달 문제로 지역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SOC 이용제한
- (개선방안)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활SOC 운영재원 조달 → 생활SOC 운영기반 강화,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고양
- (공익신탁 제도) 지역금융기관이 주민의 기부금을 적립해 생활SOC 운영에 지원하는 공익신탁상품* 출시(지자체**-지역금융기관 간 MOU 체결)
 - (신탁 운영) 기부자(위탁자)마다 개별계좌 개설, 동 계좌들을 지역 금융기관(수탁자)이 하나의 펀드로 운용하고 운용수익금과 기부금을 운영지원 용도로 생활SOC 운영주체에 지급(반기 1회)
- * 공익신탁제도: 기부재산을 수탁자(특정 개인·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위탁자(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법무부)
- ** 신탁펀드의 적정 운용규모 조성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다양하게 상품구성
 - (지자체 출연)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마중물로 주민·기업의 기부액 일정액을 매칭(matching) 출연하는 방안 강구
 - (인센티브) 기부액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공익신탁법 제28조)
- *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10% 범위 내 손금산입, △(개인)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 내)의 15%세액 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생활SOC 운영지원 목적 공익신탁상품 예시>

- (MOU 체결주체) 00 광역시 내 XX구 - △△은행
- (상품 구조) 공익신탁상품 가입대상, 기부금 사용처, 인센티브 등
 - (당사자) △(위탁자) XX구 주민 및 법인과 기타 해당 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개인·법인(위탁금액의 상·하한 제한 없음), △(수탁자) △△은행
 - (가입방법·유형) △(방법) 위탁자가 △△은행 지점 방문, 인터넷·모바일 banking 등으로 가입, △(유형) 원금과 이자 모두 기부(유형1), 이지만 기부(유형2)* 중 택1
 - *유형2는 신탁기간 종료시 위탁자에게 원금 반환
 - (기부금 사용) △△은행이 펀드 운용수익금과 기부금을 XX구 소재 생활SOC 공공요금, 운영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운영주체에 지급(반기 1회)
 - (가입 인센티브) △(법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10% 범위 내 손금산입, △(개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 내)의 15%세액 공제



마을만들기 펀드(일본 세타가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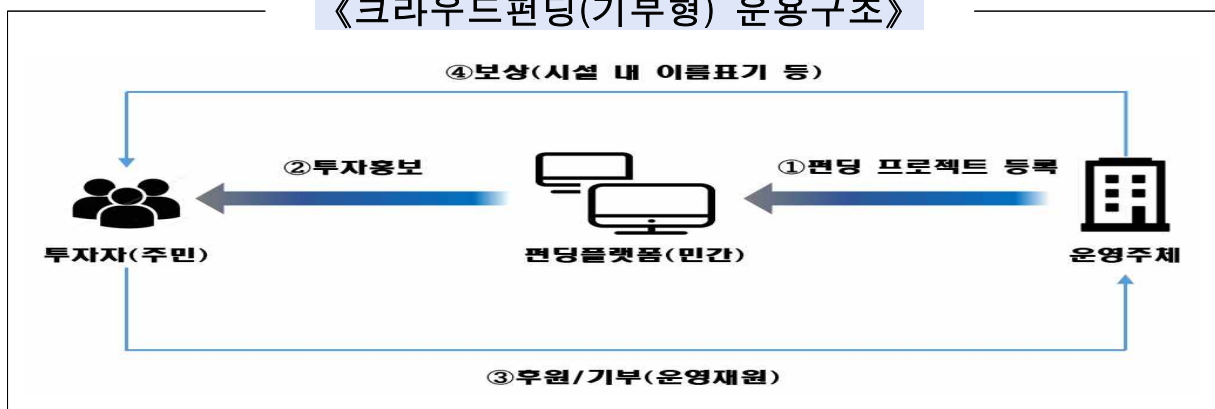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공익신탁)은 區民 주도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92년 시작). 재원은 구민, 지자체, 지역기업의 기부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조달하며 미쓰이 신탁은행(지역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주민활동에 대한 조성사업(마을문고, 건강거점 조성 등) 시행 중

- (크라우드펀딩 모금) 생활SOC 운영주체가 펀딩플랫폼에 '운영비조달 프로젝트' 등록 → 주민 기부금을 모집해 운영재원으로 활용

※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사회공익활동 등 프로젝트에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금전적 보상이 아닌 기념품이나, 후원자 명단 기입 등으로 보상

- 펀딩참여에 대한 보상(incentive)으로 투자자(주민)들에게 시설 내 이름표기, 기념품 등을 제공해 참여유인 제고

《크라우드펀딩(기부형) 운용구조》



5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 : 주민참여

◇ 지역주민,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 (현황) 현재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되어 기획·조성·집행, 주민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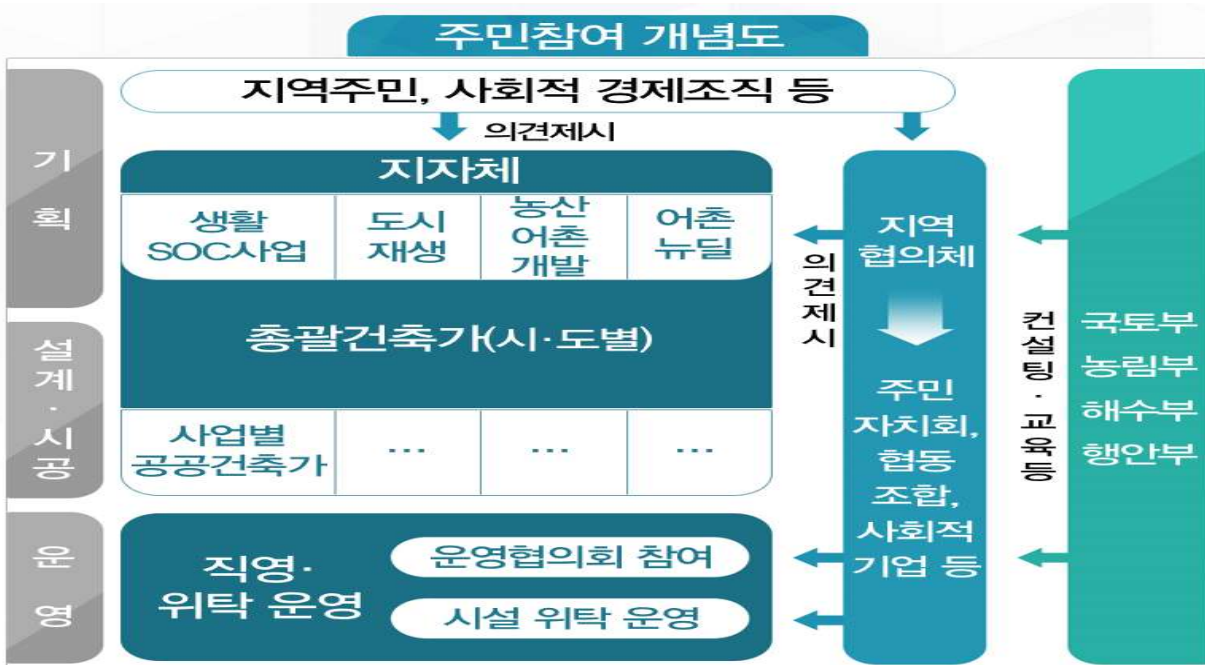
| 구분 | 기획 (Plan) | 조성 (Do) | 운영 (See) |
|----|-------------|-----------------|--------------|
| 현재 | 지자체 수요조사.계획 | 지자체 설계.발주.건설 감독 |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

○ 지역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생활SOC가 공급·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참여 촉진이 필수적이며, 사업단계별 참여모델 정립 필요

□ (개선방안) 지역주민, 사회적 경제조직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기획-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 걸쳐 참여 촉진

○ 설계-시공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운영관리단계에서 주민주체 양성을 목표로 교육 등 추진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도시재생), 추진위원회(농산어촌 개발), 주민협의체(어촌뉴딜), 주민자치회(행안부) 등 다양한 지역협의체 육성·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방안

○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관련 제도개선 既조치

⇒ 새롭게 도입된 제도개선 내용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자체·교육청 계약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①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12.31 → '2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의4 개정 / '19. 1. 1. 시행)

* 사회적기업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50%·재산세 25%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50%

②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 확대(0.5점 → 1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 '18. 1. 1. 시행)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기재부 예규), '사회적 책임' 항목 가점 확대
(1점 → 2점 / '18. 4. 1. 시행)

③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2천만원 이하 계약 → 5천만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개정 / '18. 7. 24.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5천만원 / 시행 '19. 3. 5일)

④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수의계약 가능
및 사용료 감면(공유재산법 제13조, 제17조 / '19. 6. 5. 시행)

- (현행) 일반입찰(최고가 낙찰), 사용료 감면 없음

- (개선) 수의계약 가능, 사용료 감면(조례로 50%)

○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합동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 TF' 구성·운영중('19. 2월~)

□ 향후계획

○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주민참여사업 추진방안 마련('19. 6, 행안부)

* 각 부처와 행안부간 협력 범위, 사업관리방안 등에 대해 MOU 체결 등 추진

○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 추진방안* 마련('19. 6, 행안부)

* 지역 전달체계 효율화,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제도개선사항

◇ 생활SOC 공급 시 총괄·공공건축가 도입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지역의 특성, 주민의 수요가 조화된 다양한 디자인의 시설 조성

- (추진방안) 총괄건축가를 두고 주민의견 수렴 및 전체 도시·건축 디자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개별사업들의 디자인 방향 등을 총괄·조정
 - 개별사업별로는 사업비의 일부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기획, 설계·시공 시 자문 등 담당
 - * 각 부처 지역개발사업과 설계비 1억원 이상 생활SOC 사업에 의무 활용 추진
 -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내실화와 조기 정착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유도

< 디자인품격향상 주요 추진방안(안)>

① 발주기관 전문성 지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

* 총괄·공공건축가 시범사업(5~7개 지자체 지원), 전문가 DB구축 등

② 사업 절차 선진화: 좋은 설계자를 뽑는 시스템으로 전환

- (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설계비 2억 → 1억원 이상)
- (설계) 공모 대상사업 확대(설계비 2억 → 1억원 이상) 및 심사간소화 등
- (허가) 심의·인증절차 간소화 등 선진국 수준의 건축허가 제도 혁신
- (시공)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역할 등 명확화

③ 각종 지역개발·생활SOC 사업에 적용

- 각 부처 사업의 시행지침 등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반영·적용

* (주요내용) ① 총괄·공공건축가 도입, ② 사업계획 사전검토 적용, ③ 설계 공모 실시, ④ 시공과정에 설계자 참여 보장, ⑤ 지역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용역 별도 발주

- (향후계획) 디자인품격향상 추진방안 상정(19. 4월 잠정, 국토부 및 관계부처)

7

생활SOC 쌍방향 플랫폼 구축

◇ 참여 소통형 생활SOC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쌍방향 온라인 소통채널로 활용(~'19.12월, 국토부)

□ (개념) 생활SOC 관련 정보를 집약하여 사용자, 정책수립자(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등), 사업자에게 맞춤 제공하는 쌍방향소통 플랫폼



○ 기존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생활SOC 소관 범부처 및 지자체 공동 사용으로 시너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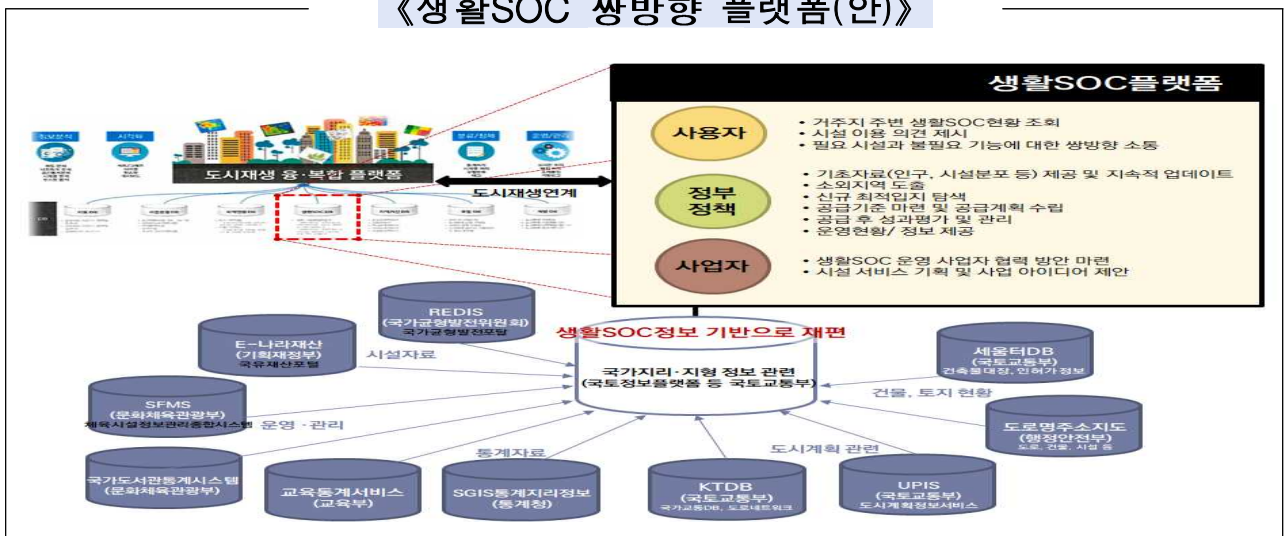
□ (주요 정책지원기능) ① 국가최소수준을 활용한 우선공급검토지역 (서비스 사각·부족지역) 탐색, ② 시설간 중첩을 통한 복합화 소요 검토, ③ 생활SOC 자산관리 등

- ④ 생활SOC 공급·운영에 관한 이용자 의견 분석 등으로 성과 제고

* (연계시스템) 유희부지/시설, 도시계획, 인구정보 및 시설별 운영현황 정보 등

□ (향후계획) 연내 시범사업 서비스 구축, '20년 본격 운영

《생활SOC 쌍방향 플랫폼(안)》



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 기대효과

- (삶의 질 향상)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 정착 촉진
 -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10분 내 접근 가능
 - 자녀,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
 - 생활문화공간에서 취미·관심사 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 (일자리 창출) 생활SOC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 지역인구·소득증가 선순환
 - 건설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 예) 1개소당 평균 고용인력 : 국민체육센터 16명, 도서관 8명, 어린이집 12명 등

2 향후계획

- (지자체 설명회, 4.17일) 금일 확정된 3개년계획에 대한 부처합동 지자체 설명회 개최 → '20년 본예산 요구단계부터 반영 조치
 - 복합화 대상사업은 5월중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부지확보, 재원 조달계획,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등 현실성 있는 수요조사 추진
 - 각 부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20년 예산(안)에 반영
- ※ 3개년계획은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향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추진이 확정된 사업이나 투자규모 확대되는 경우 추가 반영 예정
- (제도개선 추진) '20년부터 생활SOC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6~12월, 관계부처)

| 분야 | 과제 | 세부내용 | 주관 부처 | 협조 부처 | 기한 |
|-----------------|---------------------------|---|--------------------------|----------------|---|
| 시설 복합화 추진 | ①복합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복합화 추진 총괄 | -복합화 대상 선정, 복합화 모델/메뉴판, 가이드라인 배포 | 균형위 | 추진단, 소관부처 | '19. 5월 |
| | ②투자계획 확정·공지 | -복합화 대상시설별·지자체별 3개년 투자물량 고지 | 각 부처 | 기재부 | '19. 5월 |
| | ③지방투자심사제도 개선 | -투자심사 횟수 확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행안부 | | 연중 |
| | ④집행·정산 체계 정비 | -e나라도움, e호조 시스템 개선 및 보조금관리지침 개정 | 기재부 | 행안부 | 필요시 |
| 추진방식 다변화 | ①학교부지·시설 복합화 | -복합화 가이드라인 및 표준 MOU(안) 마련 -학교 복합화 수요조사 -지자체 수요와 연계 등 | 교육부 | 추진단 (행안부) 소관부처 | '19. 6월 '19. 5월 '19. 6월~ |
| | ②다른 공공시설 사업 연계 | -공원 규제 완화방안 마련 -주치환경개선사업 연계방안 마련 -공공청사 복합개발 연계방안 마련 -연합기숙사 연계방안 마련 |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교육부 | 소관부처 소관부처 | '19. 10월 '19. 6월 '19. 6월 '19. 6월 |
| | ③국·공유지 활용 |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영구시설물 설치불가 예외인정, 사용허가 기간 연장 등) -국유재산 관련 법령개정 추진 | 기재부 | | '19.6월 '19.12월 |
| 국고 보조율 조정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복합화시설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방안 마련 | 기재부 | | '19.4월 |
| 지속가능 운영 | 녹색건축물 도입 | -녹색건축물 도입방안 마련 *20년부터 의무화 대상에 생활SOC 포함 | 국토부 | | '19.12월 |
| 지역참여 | ①주민참여 촉진 | -주민참여사업 추진방안 마련 | 행안부 | 소관부처 | '19.6월 |
| | ②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방안 마련 | 행안부 | 소관부처 | '19.6월 |
| 디자인 품격향상 | 생활SOC사업에 대한 총괄·공공건축가제도 도입 | -디자인품격향상 추진방안 마련 | 국토부 | 소관부처 | '19. 4월 |
| 쌍방향 플랫폼 | 생활SOC 쌍방향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 -도시재생플랫폼에 생활SOC 쌍방향 플랫폼 구축 | 국토부 | 소관부처 | '19.12월 |